

의안번호	제 208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5년 8월 24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8월 24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자활 기업의 창업을 위한 기초능력 향상,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활 활성화 기준을 명확히 하고,
- 기금의 자금관리 공무원에 대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자활 활성화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 신설(안 제3조의2)
- 자금관리 공무원에 대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(안 제12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(안 제1조 등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운용관리에 관하여”를 “운용관리에”로 한다.

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제3호로 한다.

2.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의 내용) 제3조제2호에서 “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”이란 충청북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말한다.

1. 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및 임대료 지원
2. 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
3.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지원
4.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
5.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 사업비, 임대료 등 사업자금 지원
6. 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
7. 자활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
8.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 지원
9. 자활참여자의 자활의식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벤치마킹 지원

제4조제1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”로, “예탁”을 “예탁(豫託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비치하여야”를 “갖추어 두어야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, “소재”를 “주소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, “얻어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3회까지(최장 6년)”을 “최장 6년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상환기관”을 “상환기간”으로, “이를 상환하지”를 “상환하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, “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”를 “제2항에도 불구하고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사유없이”를 “사유 없이”로, “아니한 때”를 “아니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사용한 때”를 “사용한 경우”로 한다.

제8조의2를 제10조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중 “이차보전”을 “이차보전(利差補填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”을 “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개시”를 “시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제1항제5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3제1항 중 “기하기 위해”를 “도모하기 위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해촉될”을 “위촉이 해제될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기금운용관”을 “기금운용관, 분임기금운용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금출납원”을 “분임기금운용관은 자활담당과장으로 하며, 기금출납원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”을 “충청북도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자활기금을 설치하고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기금의 <u>운용관리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운용관리에</u> ----- -----.</p>
<p>제3조(기금의 용도) (생 략) 1. (생 략) 2. <u>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</u> 3. <u>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및 임대료 지원</u> 4. <u>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</u> 5. <u>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지원</u> 6. 그 밖에 도지사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	<p>제3조(기금의 용도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<u>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</u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3. ----- ----- -----</p>
<p><신 설></p>	<p>제3조의2(자활 활성화 사업 지원의 내용) 제3조제2호에서 “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”이란 충청북도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말한다. 1. <u>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사업비 및 임대료 지원</u> 2. <u>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찬회 등 사업 지원</u></p>

현행	개정안
	<p>3. <u>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사업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 운영지원</u></p> <p>4. <u>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</u></p> <p>5. <u>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 사업비, 임대료 등 사업자금 지원</u></p> <p>6. <u>자활기업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</u></p> <p>7. <u>자활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</u></p> <p>8. <u>자활참여자에 대한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 지원</u></p> <p>9. <u>자활참여자의 자활의식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벤치마킹 지원</u></p>
<p>제4조(기금의 관리)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<u>의하여</u> 운용한다.</p> <p>②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,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통합기금에 <u>예탁</u>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도지사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<u>비치</u>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기금의 관리) ①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「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<u>따라</u> ----- --- <u>예탁(豫託)</u>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<u>갖추어 두어야</u>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<u>의거</u>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<u>소재</u>를 둔 개인·기관·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</p>	<p>제5조(지원대상)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<u>주소</u>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다. 1. ~ 7. (생략)</p>	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)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·기관·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	<p>제7조(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) ----- ----- ----- ----- -- 경우에는 ----- --- 받아야 -----.</p>
<p>제8조(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 ① ~ ② (생략) 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,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, 최대 3회까지(최장 6년) 연장해 줄 수 있다.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%로 하되, 상환기관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2%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. ⑤ 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.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</p>	<p>제8조(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최장 6년까지</u> ----- -----. ④ ----- -----, <u>상환기간</u>----- <u>상환하지</u> ----- -----. ⑤ ----- ----- <u>경우에는</u> <u>제2항에도 불구하고</u>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사유 없이</u> ----- ----- ----- <u>아니한 경우</u> 3.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<u>사용한 때</u></p> <p>⑥ (생략)</p>	<p>----- ----- <u>사용한 경우</u>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8조의2(사회보험료 지원)</u> (생략)</p>	<p><u>제10조(사회보험료 지원)</u> (현행 제8조의2와 같음)</p>
<p>제9조(<u>이차보전</u>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<u>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</u>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<u>이차보전(利差補填)</u>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u> -----.</p>
<p>제11조(기금운용계획)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<u>개시</u>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당해</u>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11조(기금운용계획) ① ----- ----- <u>시작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해당</u>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의2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<u>부</u>의하는 사항</p>	<p>제11조의2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<u>회의에 부치는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<p>제11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</p> <p>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<u>기하기</u>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<u>해촉될</u> 수 있다.</p>	<p>제11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</p> <p>① ----- <u>도모하기</u> 위하여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위촉이</u> 해제될 -----.</p>
<p>제12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<u>기금운용관</u>과 <u>기금출납원</u>을 둔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자활담당국장으로 하고, <u>기금출납원</u>은 자활담당사무관으로 한다.</p>	<p>제12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----- ----- <u>기금운용관, 분임기금운용관</u>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분임기금운용관</u>은 자활담당과장으로 하며, <u>기금출납원</u> -----.</p>
<p>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<u>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</u>을 준용한다.</p>	<p>제15조(관계규정의 준용) ----- ----- ----- <u>충청북도 재무회계에</u> 관한 규칙-----.</p>
<p>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6조(시행규칙) ----- <u>시행에</u> ----- -----.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18조의3 (자활기금의 적립)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

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

제26조의2 (자활기금의 설치)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또는 시·군·구에 설치할 수 있다.

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26조의4 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 [개정 2012.6.12] [[시행일 2012.8.2]]

1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(補填)
2.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
3.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
4.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
5.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
6.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
7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

가.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

나.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

8.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

9. 자활사업 연구·개발·평가 등을 위한 비용

10. 수급자 및 차상위자(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)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국민연금법」 또는 「고용보험법」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

제26조의5 (기금의 운용·관리 등) ① 기금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운용·관리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, 기금재무관,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.

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6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기금은 세계현금(歲計現金)의 수입·지출·보관의 절차,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·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
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